

●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-02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9일

울산전파관리소장

1. 근거법령 : 전파법 제72조 제2항
2. 법령위반사항 : 정기검사 불응
3. 처분내역 :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4.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: 2022. 2. 3.(목) 10:00
5. 송달대상 및 내역

번호	허가번호	시설자명	위규내역	시설자주소
1	41-1992-20-0000127	박○철	정기검사 불응	울산광역시 남구

6. 참고사항

가.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(의견제출)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다만,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(면제)됩니다.

- 검사기관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(TEL 051-440-1052)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(TEL. 052-231-8936, FAX. 052-257-093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